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5. 25 선고 2021가단143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서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철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사업에 관하여 2020. 10.경 체결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9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20. 1.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D로 증서 2020년제307호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 원고는 2020. 1. 22. 피고 B에게 94,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B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은 2020. 4. 30.로 정하였다.

제5조 피고 B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생략)

제9조 피고 B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0.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E로 피고 B이 운영하던 논산시 F 소재 G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내의 집기 등(이하 ‘이 사건 식당집기’라 한다), 2021. 8.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H로 피고들의 거주지의 가구, 가전제품 등(이하 ‘이 사건 가구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각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가 최고가매수인 및 우선매수인으로서 각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식당집기 및 가구 등을 모두 인도받았으며, 원고는 위 각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4,647,740원 및 1,190,240원 합계 5,837,980원을 배당받았다.

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0. 10.경 이 사건 식당의 대표자는 피고 C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논산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피고 B에게 현금 및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 정도를 빌려주었고,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일부 변제받는 등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2020. 1. 2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채무를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9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총 116,796,780원을 변제하였는데, 원고가 과다한 이자를 요구하면서 종전 피고 B이 변제한 금원이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변제 충당되어 원금이 94,000,000원 정도 남아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나. 판단

공증인이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라 할 것이고, 공증인법은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열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앞서 본 증거에 비추어 보건대,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과 달리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식당집기 및 이 사건 가구 등에 대하여 2번에 걸쳐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음에도 피고 B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음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원고와 피고 B은 종전의 계속된 금전거래 관계에서의 잔존 채무액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9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식당집기 및 가구 등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통하여 합계 5,837,980원을 배당받았고 이는 원금인 94,000,000원에 대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95일간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에 해당하므로, 1)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변제기일 다음날인 2020. 5. 1.로부터 95일이 경과한 다음날 2020.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 C와 사이에 2020. 10.경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식당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사업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대상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다시 피고 B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을 취소하고 위 금액 상당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실시한 유체동산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설사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대상인 이 사건 식당 영업이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서 이를 양도함으로써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거나, 이미 빠져 있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어야 하는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논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는 2020. 10. 14. 동산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식당 내에 있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점, 2020. 10.경 이 사건 식당 영업으로 인하여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식당의 영업권 자체가 재산적 가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이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서 이를 양도함으로써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거나, 이미 빠져 있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미

[별지]

양도·양수 대상의 표시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끝.

$$1) 94,000,000\text{원} \times 24\% \times 95\text{일}/365\text{일} = 5,871,780\text{원}$$